

의안번호	제575호
의결 연월일	2013년 12월 일 (제325회)

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임현의원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11월 29일

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임 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11월 29일

발 의 자 : 임 현, 김희수, 심기보
김봉희, 김형근, 정지숙
김종필 의원

1. 개정이유

2013년 4월 갈등관리업무가 감사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주무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주무부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 - 간 사 : 감사관 → 자치행정과장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.
 - 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감사관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<u>감사관</u>이 되고, 서기는 갈등 업무담당자가 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간사는 <u>자치행정과장</u>이 되고, 서기는 갈등 업무담당자가 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
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(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 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